

|          |      |   |
|----------|------|---|
| 의안<br>번호 | 1528 | <b>[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<br/>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]</b><br><b>심사보고서</b> |
|----------|------|---|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3. 14.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3. 14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3. 26.(금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조수관)

### 가. 제안이유

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  - 명칭 : “○○○동 주민자치회”
  - 정원 : 30명 이상 50명 이하
- 주민자치회 위원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부터 제22조까지)
  - 위원추첨관리위원회 : 동장포함 7명 이내
  - 위원 선정 : 위원추첨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. 단, 최초 구성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의 50퍼센트 이내는 추첨 없이 선정 가능
  - 위원 위촉 : 구청장
  - 주민총회 : 연 1회 이상 개최, 주민자치회 의결된 안건 상정
-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)
- 주민자치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)

다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~ 제29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계화)

- 본 제정 조례안은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·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·운영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기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
-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
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